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3546 |
|----------|-------|

발의연월일 : 2023. 7. 28.

발의자 : 김진표 · 이상현 · 양기대
신정훈 · 전혜숙 · 김철민
안규백 · 조승래 · 윤영찬
한준호 · 한기호 · 김병주
이현승 · 성일종 · 박성중
송갑석 · 기동민 · 정성호
최형두 · 유기홍 · 윤후덕
의원(21인)

제안이유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 운영 후 중위로 임관하게 하여 군연구소, 방산업체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복무하며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전공분야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 - 군 복무 - 취업 · 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 · 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전

문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는 계급·보직이 없어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 관련 전문분야와 연계한 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록 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3조).

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안 제6조).

사.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

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자.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①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군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 제5조(교육과정)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기초군사훈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 수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졸업자의 임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제10조(의무복무) ① 제9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4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

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장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제12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 ① 공무원 중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학과정과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를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